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부에 방위산업물자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685”를 “687”로, 일반직 계 “677”을 “679”로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53”을 “65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1]

국방부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군인제외) 정원표(제2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85</u>	<u>687</u>	+2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677</u>	<u>679</u>	+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653</u>	<u>655</u>	+2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6